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6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2
참고자료. 1. 가석방 전자감독 결정 및 집행절차도	7
2. 최근 5년간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전자장치 부착 현황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누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범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III. 검토의견

1.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¹⁾ 무기형 수형자가 가석방 되는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아니한 무기형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는 경우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u>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이하 “특정범죄²⁾”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이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는 부착의 예외를 두고 있음³⁾.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 전자장치가 부착됨.(법 제13조 제1항)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

- 또한,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게는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⁴⁾.
- 즉, 범죄의 유형을 불문하고 가석방이 예정되는 전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여부 결정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⁵⁾하도록 되어 있음⁶⁾.

<가석방 대상자의 전자장치 부착 유형>

구 분	부착 결정 주체	부착 기간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	의무적 부착 (단,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미부착 가능)	가석방 기간 전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심사위원회	가석방 기간 전부 또는 일부

-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는 않았지만 무기징역 또는

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6) [참고자료1] 가석방 전자감독 결정 및 집행절차도

무기금고를 선고받아 형 집행중인 무기형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⁷⁾ 심사위원회 심사로 예외를 두지 않고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려는 내용임.

-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출소 후 재범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무기형 수형자의 경우 형 집행 2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⁸⁾ 될 수 있는데 가석방으로 인한 출소자의 형기별 재복역율을 살펴볼 경우 20년이상 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사람의 재복역율이 더 적은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석방으로 인한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재복역자 형기									총계
	6월 미만	6월~1년	1년~3년	3년~5년	5년~7년	7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 이상	
출소인원	49	1,719	5,247	1,101	232	105	131	59	50	8,693
재복역인원	1	121	429	60	5	5	6	2	1	630
재복역률	2.0%	7.0%	8.2%	5.4%	2.2%	4.8%	4.6%	3.4%	2.0%	7.2%

자료 : 법무부

7) [참고자료2] 최근 10년간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 현황

8)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뇌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참고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7)은 제73조의2⁹⁾제3항을 신설하며 ‘무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개정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특정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은 필요적으로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며, 무기형 선고자는 특정범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없이 전자장치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한변호사협회는 무기형 수감자의 가석방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을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가석방 수감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9)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실제 무기형 수감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의 전자장치 부착비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러 입법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75

참고자료1

가석방 전자감독 결정 및 집행 절차도

심사 대상

- 가석방 예정자 전원



부착적합성 조사

- 보호관찰관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가석방 예정자 전원에게 대해 범죄경력, 범죄의 상습성, 귀주 환경, 사회복귀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



부착여부, 기간 심사·결정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결정



집행 (보호관찰관)

- 가석방 당일 출소 즉시 전자장치 부착
 - 의무사항 고지 및 전자장치 사용방법 안내
 - 부착집행 거부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즉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
- 야간외출제한, 음주제한, 생업종사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엄격 관리
 - ※ 위반시 가석방 취소 신청



종료

- 전자장치 부착기간 경과 또는 가석방 기간 경과
- 전자감독 또는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 가석방 취소
 - ※ 종료 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자료 : 법무부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전자장치 부착 현황
-------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인원	14	19	17	16	11
전자장치 부착 인원	14	19	16	16	11
전자장치 미부착 인원	0	0	1 [고령(79세) ·치매]	0	0

자료 : 법무부